

북방경제협력과 한반도: 남·북·몽 경제협력 과제와 추진전략

박정후(서울대학교)

■ 북한과 몽골의 관계

1. 정치적 관계

□ 북한과 몽골은 1948년 10월 15일 공식수교 이후 몽골의 민주화 이전까지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 유지

○ 1990년 3월 한국과의 수교 이전 단독수교를 체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현재까지 유지

○ 한국전쟁 기간 동안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을 지원

- 유류, 가축, 피복 등 북한에 각종 전쟁 물자 등을 지원.¹⁾

· 1952년 북한은 200명의 전쟁고아를 교사 8명과 함께 몽골에 보내 양육을 위탁. 몽골은 1959년까지 양육 및 교육을 제공²⁾

○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후 복구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수시로 이루어짐.

- 1951년도부터 전쟁이 끝난 1955년 사이에 가축, 피복류, 식료품, 피복류 등의 물자를 총 12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1959년에도 선물 혹은 증정의 명목으로 가축을 지원³⁾

□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진영외교를 강화하고 전후 복구를

1) ‘몽골인민들은 이미 1951년 봄에 다량의 물자와 7천필의 말을 우리나라에 보내줌으로써 원썬들의 약탈적 만행으로 말미암아 곤난을 당하고 있던 조선인민의 축력부적을 타개하는데 다대한 도움을 주었다. 금년 1월에는 또다시 많은 물자와 500여 톤의 육류, 그리고 5천여개의 모피, 의류, 그리고 5천여 벌의 아동의류를 원호물자로 보내주었으며 금년 5.1절 기념선물과 24차량에 달하는 막대한 선물을 보내주었다. 조선인민들은 이와 같은 물심량면의 끊임없는 원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표시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2년 7월 11일자 논설.

2) ‘몽골은 1952년 9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3~6살 나는 111명의 남자와 89명의 여자를 포함하여 모두 200명의 아이들을 교양원들과 함께 받았다. 조선 고아들을 자이싼 봉우리의 좌측에 있는 건물을 내고 들도록 하였다. 몽골측에서 여기에 27명의 인원을 임명하여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1955년에는 샤르가 모리트에 아이들을 위한 야영지를 건설하였다.’, ‘1954년도부터 학교 체계로 넘어가 유치원 1학년 2개 반, 2학년 3개 반을 조직하고 조선어와 몽골어, 산수 등 과목을 가르쳤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59년 6월에 조국으로 귀국시켰다.’, 잔즈브도로취 톰보(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쪽.

3) 바트투르(2011),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196쪽.

위한 경제적 지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외교정책 추진

○ 김일성을 단장으로 한 북한정부대표단이 1956년 몽골을 방문. 같은 해 10월 몽골 쟈덴발 수상을 단장으로 한 몽골정부대표단이 북한을 답방. → 양국의 외교관계 활성화

- 구소련 붕괴이전 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권 진영외교의 틀 속으로 우호적으로 지속됨

□ 1991년 12월, 구소련이 공식 붕괴되면서 탈냉전 시기 도래.

○ 북한은 체제와 정권수호 및 고난의 행군 시기 극복을 위해 비단 기존 수교국들뿐만이 아닌 전방위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시행

- 북한과 몽골은 1996년 5월, ‘상호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 교류협력 관계가 진전되는 양상이었음.

□ 1990년 몽골민주정부 수립과 한국과의 공식수교를 계기로 일시적 부침

○ 몽골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함. 이에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등 한국의 대북정책에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

-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1999년 주몽골북한대사관을 철수 하는 등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 그러나 2002년 8월,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몽골을 방문하여 양국 간 ‘신우호협력의정서’ 체결. 북한과 몽골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함

○ 2003년 8월, 몽골 엔흐바야르 총리 방북하여 무상원조 협정 및 투자보장협정을 체결. 이듬해인 2004년 8월, 주몽골북한대사관이 재개설됨으로서 양국 관계는 경색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됨.

○ 2004년 12월에는 바가반디 대통령이 방북하여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7년 7월에는 북한의 공식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방몽하여 엔흐바야르 대통령과 정상회담

-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보건, 과학, 무역, 해상수송, 노동력 상호교환 협정을 체결.

· 노동력 상호교환 협정에 있어 북한에 매우 우호적인 조건이 신설. → 몽골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부담금을, 북한 노동력 고용에는 면제하도록 합의.(북한 노동력 수출입 용이)

· 몽골정부, 2008 ~ 2012년 기간 동안 매년 북한 노동자 5,000명을 고용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는 등 북한 노동력의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표명함.

※ 이 기간 동안 몽골의 북한 노동자 수는 매년 1,800~ 2,000명 수준을 유지. 2013년에는 몽골의 경기호황과 더불어 광산, 건설, 토목 현장 등에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5,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몽골에서 고용됨.

※ 최근 몽골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17년 현재 몽골 내 북한 노동자의 약

70%가 귀국하여 7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⁴⁾

□ 북한과 몽골은 공식 수교 이후 몇 차례 부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발전시켜나가고 있음

○ 일례로 2016년 태풍 라이언룩으로 인한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에 참여하는 한편,⁵⁾ 북한노동자의 유입을 계속 허용하고 북한과의 교역량을 늘이는 등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음.

○ 북한에 호혜적, 시혜적 태도를 견지함과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표명하는 등 한국과 미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였음.

<표 1> 몽골의 한반도 관련 주요입장 표명

일 시	내 용
2005. 12	앵흐바야르 대통령 방중시 몽·중 공동성명
2006. 5	노무현 대통령 방몽시 한·몽 공동성명
2007. 5	앵흐바야르 대통령 방한시 공동 언론발표문
2009. 5	북한 2차 핵실험에 대한 유감 및 한반도 비핵화 지지성명 발표
2013. 2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감성명 발표
2016. 1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유감성명 발표
2016. 2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감성명 발표
2016. 5	엘벡도르지 대통령 방한 시 한반도 비핵화지지

자료: 외교부(2016), 『2016 몽골개황』, 119쪽.; 강병철, “몽골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지지…통일, 전 세계에 좋은 소식’ ”, 「연합뉴스」, 2016년 5월 19일자를 참조하여 작성.

□ 2017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칼트마 바툴가(Khaltmma Battulga) 몽골 대통령은 산업농업부 장관이었던 2014년 4월, 북한을 공식 방문하여 목축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같은 해 7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당시 엘벡도르지 대

4) 강치구, “몽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도 北 노동자에 대한 조치 없어”, 「RFA」, 2017년 9월 21일자.

5) 「Undesnii medee」, 2016년 11. 22일 자

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북한을 공식 방문

○ 이원집정부 체제인 몽골에서 국방과 외교를 전담하는 몽골 대통령이 현 김정은 체제의 북한에 방문하여 양국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북한 주요 인사들과 교류경험 → 향후 몽골과 북한의 협력관계 유지·발전에 긍정적

2. 경제적 관계

□ 1948년 북한과 몽골의 공식 수교이후에 양국 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은 꾸준히 이루어짐

○ 한국전쟁 기간을 시작으로 이후 1950년대에 몽골은 공식적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 원조 제공

○ 양국 간의 경제적 교류는 사회주의 진영논리에 입각한 무상원조와 호혜적 관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다 1956년 11월에는 평양에서 양국 간 최초의 경제협정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몽골인민공화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됨⁶⁾

○ 1954년 북한은 쌀 20톤, 사과 10톤을 몽골에 무상으로 제공. 1961년에는 몽골 북한친선 기숙사와 중등학교 건물을 투브 아이막(Tuv Aimag)의 알탄불락 쉼(Altanbulag Sum)에 건설해서 양도. 1966년 몽골에 건축용 자재와 공구들을 원조⁷⁾

□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이, 북한과 몽골의 경제교류는 한시적으로 소원해짐

○ 구소련이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상호지원회의(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를 통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주창했고, 몽골이 이에 적극 참여한 반면, 북한은 자주노선을 강조하며 COMECON에 가입하지 않음

○ 1968년 북한이 몽골에 북한주민 8만여 명을 이주시키려 하는 등의 경제민족주의 성향을 표출한 것도 양국관계의 침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됨⁸⁾

□ 1980년대 중반 구소련 연합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양국의 경제협력논의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

○ 1985년 2월 12일, 소련, 중국, 북한, 몽골 4개국 간 ‘1985년도 수출입 및 국제철도화물수송에 관한 의정서’ 중국 베이징에서 체결

○ 1986년 8월 20일 평양에서 북한과 몽골 간 ‘1987년도 상품납입 및 지불의정서’ 조인⁹⁾ 및 같은 해 11월, 몽골 인민혁명당 총비서가 방북하여 ‘몽골인민공화국

6) 「로동신문」, 1956년 11월 4일자.

7) 이주현(2014), 『북한과 몽골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쪽.

8) Balazs Szalontai, “A Korean Autonomous Territory in Mongolia?”, 「NKNEWS」, 2016년 5월 16일자.

9) <http://news.join.com/nknet>, 윤황(2008), 「북한과 몽골의 경제발전」, 『한국동북아논총』 제49권, 294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공민들의 호상려행에 관한 협정’,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 및 과학분야의 협조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

- 당시 몽골은 구소련에 의해 주도된 COMECON 회원국으로서, 경제발전 계획이 COMECON의 것과 연동된 상태. 아울러 구소련 및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차관 및 무상지원, 투자에 의존하던 몽골의 경제는 1985년 구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로 일컬어지던 일련의 경제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시작함

- 구소련과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대몽골 지원에 상대적 소원함을 야기했고, 위기를 느낀 몽골은 기존 구소련과 몇몇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의지하던 경제교류 및 협력관계를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함

- 1986년 몽골 집권당 총비서가 북한을 방문하고, 이후 북한과 일련의 경제협력 관련 협정들을 체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할 것임

□ 1988년 6월, 김일성 주석이 몽골을 방문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

○ 북한은 자원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방법으로 몽골에 석회암이나 석탄과 같은 원자재를 가공하는 시설을 북한의 기술을 통해 건설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함

- 반면 몽골은 북한의 인프라와 항만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과의 원자재 유통로를 개척하여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희망함.

○ 김일성 주석의 방문 이후 북한은 20여 년간 소원했던 몽골과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함¹⁰⁾

<표 2> 북한과 몽골정부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

일 시	주요 내용	장소
1955. 9. 17	우편물 및 소포교환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1955. 9. 17	전화, 전신연락설정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쪽에서 재인용.

10) ‘조선인민과 몽골인민은 공동의 목적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함께 투쟁하여온 혁명 전우이며 계급적 형제입니다. 우리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맑스 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언제나 긴밀히 지지 협조하여 왔습니다. 몽골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었으며 오늘도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시 친선군중대회 김일성의 연설”, 『로동신문』 1988년 7월 1일자, 잔즈브도로쥬 톰보(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77쪽에서 재인용.

1956. 11. 2	경제,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평 양
1981. 9. 25	보건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1986. 11. 14	국민들의 호상여행조건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1986. 11. 21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평 양
1988. 10. 29	민사, 가족 및 형사사건의 법률상방조를 서로 제공함에 관한 협정	평 양
1989. 4. 7	영사 협약	평 양
1989. 8. 3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평 양
1995. 6. 8	수의방역 및 수의검역 분야의 협조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1996. 5. 10	수송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평 양
2002. 8. 8	친선관계 및 협조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2002. 8. 8	쌍무적 협정들의 효력에 관한 정부 간 의정서	울란바타르
2003. 11. 19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평 양
2003. 11. 19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 및 탈세방지 협정	평 양
2003. 11. 19	울란바타르시와 평양시 사이의 친선도시 설정에 관한 협정	평 양
2003. 11. 20	몽골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제공할 무상원조에 관한 협정	평 양
2004. 8. 6	외교대표부 부지와 건물비용에서 호상성 적용에 관한 협정	울란바타르
2004. 12. 21	무역 협정	평 양
2004. 12. 21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평 양
2004. 12. 21	몽골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원조 제공 관한 의정서	평 양
2005. 2. 3	경제·무역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6차 회의 의정서	울란바타르
2007. 7. 20	양국은 보건, 과학, 무역, 해상수송, 노동력 상호교환	울란바타르

	협정을 체결	
2013. 10. 28	공업, 농업, 문화, 체육, 관광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	평양

자료: 잔즈브도로췌 롬보(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95~97쪽.; 김정은·윤일건, “몽골 대통령 방북… 김영남과 정상회담”, 「연합뉴스」, 2013년 10월 28일자.; IKON, “Е рөнхий лөгчийн БНАСАУ-д хийж буй төрийн айлчлал эхэллээ”, 「IKON」, 2013년 10월 29일자를 참조하여 작성.

□ 2004년 평양에서 체결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 하여 이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된 협정들을 체결

○ 2006년 이래 지속된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타국과의 정부 간 협의체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몽골과는 ‘북한-몽골의 기업 협의회’라는 비정부 협의체를 개설함으로써 경제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는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¹¹⁾

- 2010년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회위원회’를 통해 평양에 몽골기업센터 창설을 합의하고 북한은 무관세협정체결을 제안하는 등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음¹²⁾

<표 3> 북한의 대몽골 교역현황

단위: 천 USD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5	35.1	1.8	33.3
2006	61.3	0	61.3
2007	238.4	20.2	218.2
2008	21.9	38.2	-16.3
2009	47.1	0	47.1
2010	798.5	25.5	773
2011	780.4	2.2	778.2
2012	525.6	97.3	428.3
2013	679.8	724.3	-44.5
2014	603.6	8.1	595.5
2015	824.1	691.8	132.3

11) 오윤체책(2015), 『몽골의 대북정책; 사회주의 형제국가에서』, 경성대박사학위논문, 64쪽.

12) 오윤체책(2015), 같은 책, 64-65쪽.

2016	383.3	1,725.10	-1,341.8
2017	342	1,977.5	-1,635.5
합 계	5,341.1	5,312	29.1

자료: 몽골통계청,

http://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400_006V3&COUNTRY_select_all=0&COUNTRYSingleSelect=_12101&Year_select_all=1&YearSingleSelect=&viewtype=table;
http://www.1212.mn/tables.aspx?tbl_id=DT_NSO_1400_010V3&IMPORT_Country_select_all=0&IMPORT_CountrySingleSelect=_12101&Year_select_all=1&YearSingleSelect=&viewtype=table 를 참조하여 작성(검색일: 2018년 6월 19일)

□ 최근 10여 년간 양국의 교역규모는 증감을 거듭하였으나, 무역수지는 현재까지 북한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북한은 제조용품, 종이, 등 1차 가공제품을 몽골에 수출, 동시에 공식 교역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노동력 송출 등을 통해 부가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핵과 미사일 부품 및 사치품 금수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중국은 물론 몽골을 통해서도 전자제품, 스포츠 장비, 각종 사치품 등을 몽골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국 사이의 정확한 교역액은 공식통계보다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추측됨.¹³⁾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등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북한과의 교역을 이어나가고 있음.

□ <표 3>의 수출입 교역규모를 보면, 2016년부터 몽골은 전년에 비해 대북한 수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남.

○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타국과의 교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몽골로부터 수입을 늘이는 것으로 해석가능

■ 남북·몽 협력방안

1. 몽골 자원개발 분야에서 남북협력 모델 구상

□ 현재 몽골의 북한 노동자는 주로 몽골의 토목, 건설 분야에 투입되어 노동을 제공

○ 몽골 노동자에 비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13) 정 영, “북 외교관 몽골 경유 금지품목 반입”, 「RFA」, 2016년 3월 3일 자.

생산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

□ 3국 정부차원의 합의를 전제로,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몽골의 자원 및 관련 제도의 시행과 운영 등 3국 협력모델을 창출 가능

○ 북한은 한국에 비해 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 분야에 북한의 저임금 숙련 기술자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임.

- 한국은 북한, 몽골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간접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고, 한국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계획가능.

- 북한은 몽골에서의 남북협력을 통해 인력송출을 통한 외화획득, 그리고 남북갈등의 부침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안정적인 외화획득 창구 창출이 가능

- 대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역할을 자임하면서 동북아평화구축에 간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자국의 위상 제고와 동 지역에서의 외교적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몽골의 입장에서, 몽골 자원개발에 한국, 북한의 공동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충분한 실리와 명분이 있는 방안임.

□ 한국과 북한은 몽골의 이러한 대 한반도 스탠스를 잘 활용하여 몽골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전략광산개발, 혹은 설비, 인프라 구축 분야에 대한 국제입찰에서 한-북-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되, 수의계약, 또는 입찰 가산점 부여 방침 선언 등을 몽골로부터 유도 가능.

○ 몽골의 3국 협력모델에 대한 이와 같은 방침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구축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을 들어 국제사회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음.

2. 북한의 나진선봉 특구를 통한 유통로 신설

□ 몽골은 출해구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의 항구를 이용해서 해상유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속.

○ 2007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몽골을 방문하여,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 홍남, 원산, 남포, 해주항을 몽골 측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¹⁴⁾

- 몽골은 바다가 없지만 몽골 국적의 선박은 운항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은 충분한 개연성.

※ 북한항구 이용에 대한 양국 간 협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몽골은 2014년 석탄 2만 톤을 몽골 내부 철도와 러시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 나진선봉 특구로 시험운송 하는데 성공.

□ 향후 남북관계가 진척되어 나선향 이용에 대해 3국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몽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최혜국대우에 준하여 국제무역항들인 라진, 선봉, 청진, 홍남, 원산, 남포, 해주항을 몽골측이 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몽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제2조, 2007년 7월 20일 체결.

골은 태평양으로의 새로운 유통로가 신설되는 것이며, 한국 또한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새로운 유통로 확보가능

○ 나선항의 안정적인 운영여부는 북한의 관련 방침과 러시아가 변수이지만 몽골-북한-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북한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개설된 유통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기 어려울 것임.

□ 현재 한국과 몽골이 교역하는 유통로는 크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항과 중국의 천진항으로 나눌 수 있음.

○ 블라디보스톡 유통로는 선적, 하역 비용이 중국 천진항에 비해 높고 통관세도 중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중국은 몽골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컨테이너 포장을 요구하는 등 몽골 자원의 수요처 다변화에 대해 몽니를 부리는 상황.

- 북한의 항구를 이용한 새로운 유통로 신설은 한국, 북한, 몽골에게 기존에는 물류비용으로 말미암아 경제성이 없었던 품목들의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고 교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3.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에 한-북-몽 컨소시엄 참여 구상

□ 2016년 6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몽-중-러 경제회랑 건설이 관련국들 간 합의됨.

○ 몽-중-러 경제회랑 구축을 위한 32건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 총 500 ~ 60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

-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2017년 2월 러시아는 몽골에 15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여 경제회랑 건설을 위한 몽골 내 철도정비 사업에 활용하기로 결정

- 중국은 몽골에 3억5천만 위안을 지원하고 향후 3년간 20억 위안을 무상원조하여 이 자금을 통해 몽골 내 인프라, 발전소, 구리제련 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

- 나아가 몽골의 해상유통로 확보를 위해 중국 내 7개 항구 이용을 허가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음

→ 몽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도로, 철도 연결 등 원자재 수송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의 경제회랑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경제회랑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국의 자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은 몽골지역에서 진행되는 동 프로젝트의 입찰에 한국-북한-몽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협력모델 창출은 물론 상호이익을 추구 가능

○ 북한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국과의 양자협력 보다는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과 연계한 협력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임

4. 농업분야에서의 3국 협력방안 강구

□ 한국은 현재 동 몽골 지역에 27만3천ha의 농지를 코이카를 통해 확보한 상황이며, 몽골의 입장에서 목축업과 밀농사, 감자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존의 산업과 겹치지 않고 남북한의 투자로 벼농사 위주의 농지가 개간된다면, 미개척 지역에 대한 개발과 세수확보 및 식량안보 구축 차원에서도 장려할 사안.

○ 향후 북한의 노동력과 한국의 투자,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몽골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합의가 3국 간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해당 사업의 재추진 가능

5. 한국-북한-몽골 합자 산업단지를 조성

□ 한반도 안보상황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며 남북 간 협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것이 적절함.

○ 기존의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해외에 조성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것임.

□ 몽골은 이미 2002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일반법’ 제정하였고, 현재 자민우드(Zamiin-Uud), 알탄불락(Altanbulag), 차강노르(Tsagaan Nurr) 3곳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되어 있음

○ 외국인이 이 지역에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입·수출 관세, 부가세, 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토지사용료를 감면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자유무역지대 인근의 인프라가 열악하며, 생산된 물품의 수요처가 러시아와 중국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유치가 요원한 실정.

□ 한국은 이 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개성공단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이 생산설비 등에 투자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적용

- 몽골에서 생산되는 주요 원자재를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생산된 물품은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을 중심으로 판로 확보 가능.

※ 남북한 양국과 동시 수교국이자 사회주의 시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오랜 우호협력국인 몽골의 중재와 완충역할로 인해 남북관계의 부침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하며 해당 사업 지속가능

<참고문헌>

- 바트투르(2011), 『20세기 한국 몽골 관계사』, KM미디어.
- 오윤채책(2015), 『몽골의 대북정책; 사회주의 형제국가에서』, 경상대박사학위논문.
- 외교부(2016), 『2016 몽골개황』.
- 윤황(2008), 「북한과 몽골의 경제발전」, 『한국동북아논총』 제 49권
- 이주현(2014), 『북한과 몽골의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잔즈브도로취 롬보(2007), 『몽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 6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201쪽.

「로동신문」

「몽골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해상운수에 관한 협정」

- 강병철, “몽골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지지…통일, 전 세계에 좋은 소식’”, 「연합뉴스」, 2016년 5월 19일.
- 강치구, “몽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도 北 노동자에 대한 조치 없어”, 「RFA」, 2017년 9월21일.
- 김수빈, “북한, 60년대 말 몽골에 ‘식민지’ 건설 시도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년 5월 25일.
- 김정은·윤일건, “몽골 대통령 방북…김영남과 정상회담”, 「연합뉴스」, 2013년 10월 28일.
- 김형섭, “朴대통령, ‘몽골 민주혁명’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 「뉴시스」 2016. 5. 19일 자.
- 유기립, “朴대통령 몽골과 北 비핵화 토대 한반도 역내 안정 노력”, 「뉴스 1」 2016. 7월 17일.
- 이용욱, “한·몽골 정상회담... ‘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합의”, 「경향신문」, 2016년 7월 17일.
- 전경웅, “카타르, 북 근로자 모두 귀국할 것. 몽골, 괜찮아, 일해”, 「뉴데일리」 2017년 9월 21일.
- 정 영, “북 외교관 몽골 경유 금지품목 반입”, 「RFA」, 2016년 3월 3일.

「Undesnii medee」, 2016년 11. 22일 자.

- Balazs Szalontai, “A Korean Autonomous Territory in Mongolia?”, 「NKNEWS」, 2016년 5월 16일.

IKON, “Ерөнхий лөгчийн БНАСАУ-д хийж буй төрийн айлчлал эхэллээ”, [IKON], 2013년 10월 29일.

<http://211.171.208.92/odisas.html>

<http://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DetailPopup.screen>,

<http://www.customs.go.kr>.

<http://ikon.mn/n/sz>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172301035&code=910203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25/story_n_10125238.html,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49803>

http://www.mofa.go.kr/countries/asiapacific/countries/20110919/1_25358.jsp?menu=m_40_10_20#contentAction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56729>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518_0014092299&cID=10301&pID=103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9/0200000000AKR20160519194500001.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0/28/0511000000AKR20131028202500014.HTML>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0/28/0511000000AKR20131028202500014.HTML>

<https://www.nknews.org/2016/05/a-korean-autonomous-territory-in-mongolia/>